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와 식품산업

송 성 완 / 한국식품공업협회

I. 서 언

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수입정책은 유망유치 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개선 등을 이유로 농림수산물을 비롯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전적 수입 관리정책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1989년 GATT 제18조의 BOP조항(개발도상 국지위)을 출입하게 됨에 따라 사전적 수입 관리정책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할 WTO가 본격 출범됨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는 물론 세제 및 보조금 등 그 동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국내농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였던 정부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산업피해구제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자라도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증가에 의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와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조치인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그리고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경우 부과하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및 수출입에 있어서 지적재 산권 침해행위와 원산지표시 및 품질표시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권고, 무역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조사·제재 등 4가지 유형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유형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농업이 식품의 원재료는 물론 식량의 자급도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식품산업은 농업과는 물론 동종 또는 유사물품간에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다. 따라서 동제도의 이용에 있어 해당물품의 산업피해만 겸토할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비교·겸토하여 세이프가드등 산업피해구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식품산업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신청은 식품원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WTO체제 하에서 국내식품산업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야기시키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개념 및 의의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란 어떤 상품의 수입급증에 의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동수입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서 모든 수출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무차별적으로 수입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는 다르다.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의무를 준수한 결과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 부과되는 대응조치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소위 공정무역행위(Fair trade activity)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이 덤프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Unfair trade activity)에 대한 보복조치와는 법적성격이 다르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수입이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에 있어서 일종의 비상조치라 할 수 있으며, 그 발동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종래 GATT체제 하에서는 준거규범의 결여로 절차가 모호하였기 때문에 수출자율규제등의 회색지대조치와 같은 편법이 선진수입국에 의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WTO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긴급조치의 발동이 명확하게 규율되고 또한 자의적 편법이 철폐되어 회색지대조치의 주 피해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2. 세이프가드협정체결 배경

종래 GATT 1947 제19조(WTO하에서 GATT 1994로 편입)에서는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동조항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 없어 동조치의 사용을 기피하였다. 즉, 동조치발동시 무차별원칙준수 및 동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한 보상의무등을 규정하거나 공정무역에 대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 상계관세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하였다.

따라서 선진수입국들은 세이프가드 발동대신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 협정(OMA)등과 같이 쌍무적차원에서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를 선호하였다.

이에따라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동조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GATT규범의 관할 밖에 존재해 왔던 회색조치를 GATT의 세이프가드를 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부터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동경라운드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무차별원칙 준수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여 협상타결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UR협상에서는 15개 협상의 하나로 선정하여 GATT 1994 제19조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체결에 성공하였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

WTO체제상의 Safeguards협정은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서 다자통제(Multilateral control)를 재확립하고 그러한 통제로부터 일탈하는 조치를 제거하고자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제한보다는 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내용은 모든 WTO회원국을 구속하게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세이프가드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사실상 선별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비차별 원칙에 따라 모든 수출국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량제한의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수입국이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의 후원으로 관련 WTO회원국과 협의하고 특정 체약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수입증가와 비교하여 불균형되게 증가하였음을 증명하면 당해 수출국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쿼터를 더 감축할 수 있다.

둘째, 수출 또는 수입에 있어서 WTO회원국들은 수출자율규제(VER), 시장 질서유지협정(OMA), 기타 유사한 회색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발동중인 회색조치는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이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 GATT XIX조에 따른 기존의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첫 발동일로부터 8년 이내에 또는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 중에서 늦은 기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넷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은 잠정조치의 발동기간과 최초의 발동기간 4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발동은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하며, 최소한 2년이 경과된 후에 허용된다.

다섯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행위인 수입에 대하여 발동되기 때문에 보상적 조정을 필요로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시 주요 이해관계국과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대적 수입증가의 경우에는 최초의 발동 후 3년간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III.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요건 및 절차

1. 발동요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그러한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전전과 GATT상 의무의 인과적인 경과이어야 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런 위협이 있고, 그 피해 또는 위협이 증가된 수입으로 야기됨이 증명되어야 한다. 셋째, 위의 두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에 필요한 시간동안 GATT상 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넷째, 수입국은 수출국으로서 상당한 이익을 가지는 체약국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체약국들은 상당하게 등가적인 양여 또는 다른 GATT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다섯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은 GATT와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구제절차

가. 우리나라의 구제절차

① 조사신청

○ 신청자격

-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단, 농림수산업인 경우 5인이상의 생산자)
- 당해 국내산업의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협동조합
-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 신청방법

- 산업피해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

②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관보게재, 신청인에게 통보)

③ 조사실시

무역위원회는 자료조사, 질문서에 의한 조사, 현지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산업피해여부를 조사

④ 잠정조치

산업피해조사 기간중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율 조정(조치기간은 200일 이내)

⑤ 산업피해유무의 판정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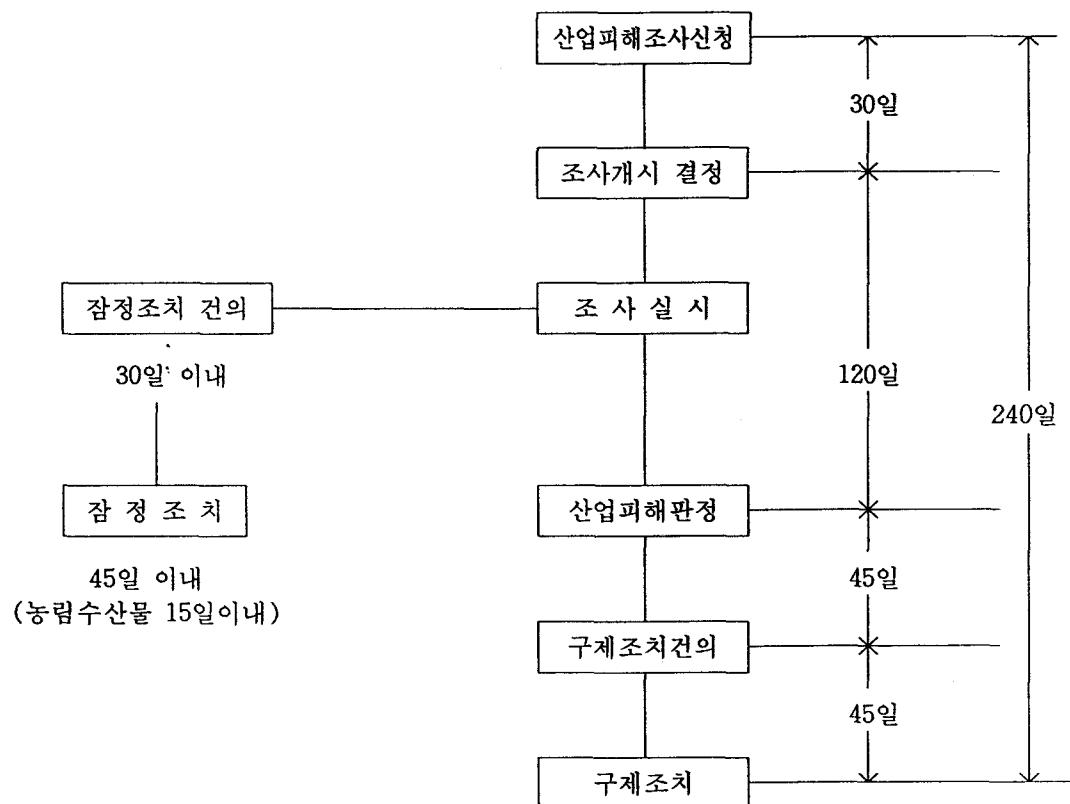
⑥ 구제조치

산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무역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 구제조치수단은 수입수량제한, 관세율조정, 기술 및 생산성향상지원, 산업합리화업종지정 등이며, 구제조치기간은 4년이며, 총 8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⑦ 구제조치의 재검토

진행중인 구제조치의 영향, 효과 등을 검토하여 그 변경·해제 또는 연장을 관계행정기관에 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구제절차)



나. 세이프가드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절차

세이프가드협정은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를 중심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에 관한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이프가드위원회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통고이다. 그러나 관련 WTO회원국은 공개를 통하여 특정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범침행을 방해할 비밀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1) 세이프가드위원회에의 통고

WTO회원국은 심각한 피해 및 그 이유에 관한 조사의 개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의 판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및 연장의 결정 등을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거나 연장하려는 WTO회원국은 심각한 피해의 판정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및 연장에 관하여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고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첫째,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및 위협의 증거, 둘째, 해당상품과 예정된 조치의 정확한 기술, 셋째, 예정된 조치의 발동일, 넷째, 동종치의 예정된 기간 및 점진적 자유화계획, 다섯째 관련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증거, 여섯째 상품무역이사회나 세이프가드위원회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 등이다.

2) 상품무역이사회에의 통고

WTO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관련 WTO회원국의 협의결과, 동조치의 중간평가결과, 협의에 따른 보상적조치 및 관련 보복조치를 즉시 상품무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관련 WTO회원국간의 협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거나 연장하려는 WTO회원국은 해당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상당한 이해를 갖는 WTO회원국들과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회원국들은 동협의를 통

여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상품무역이 사회에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며, 동조치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며, 동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WTO회원국에 대한 보상적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양해를 하게 된다.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에는 동조치가 취하여진 직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공개성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위한 조사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개적 통지(public notice)와 공개청문회 또는 수출업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증거와 견해를 제출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될 수 있다. 관련당국은 판정결과와 사실과 법에 관한 모든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IV.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1. GATT의무의 정지와 양허의 철회

체약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또는 GATT의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체약국은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GATT XI조상의 의무를 포함한 GATT의 어떤 의무도 정지 할 수 있다. 실제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것이 GATT의 관행이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으로서 관세 인상과 수량제한이 자유로이 부과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협정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에 새로이 구조조정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에 필요하고 또한 국내산업이 구조조정(adjustment)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발동된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목적이 된다.

가. 선별적 발동의 제한적 인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발동된다. 따라서 그동안의 선별적 적용여부에 관한 논쟁은 비차별원칙의 인정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량 제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관세인상의 형식을 갖는 경우라면 비차별적 발동이 원칙일 것이다.

수출국들 사이에서 수량제한이 할당되는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WTO 회원국은 해당 상품의 공급에 상당한 이해를 갖는 모든 WTO회원국들과 할당량에 대하여 합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조치를 취하는 WTO 회원국은 “과거 대표적 기간동안(a previous representative period)”의 수출량 또는 수출액이 해당 상품의 전체수입량 또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치를 취하는 WTO회원국은 세이프가드위원회의 후원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동위원회에 분명히 증명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다. 대표적 기간동안 특정 WTO회원국의 수입이 전체수입에 비교하여 불균형되게 증가하고, 과거 실적에 따른 할당의 원칙에서 일탈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 일탈 조건이 해당 상품의 모든 공급국에게 형평적인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기본기간인 4년보다 연장될 수 없다.

이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수량제한의 선별적 적용의 허용은 전통적인 수출국과 새로운 수출국사이에 사실상의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다.

나. 잠정조치

세이프가드협정은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previsional safeguard measures)가 발

동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야기될 “중대한 경우(critical circumstances)”에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잠정조치가 발동되기 위하여는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위협이 된다는 분명한 증거의 존재에 대한 예비적 결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이 내려져야 한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의 형식을 띠며,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부정적 판단이 내려지면 즉각 인하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전체 존속기간에 합산된다.

다. 재발동금지

WTO협정의 발효후 발동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종전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발동이 가능하며, 최소한 2년의 비발동기간(period of non-application)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0일 이내의 재발동이 인정될 수 있다. 동일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된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과거 5년동안 3회 이상 발동되지 않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발동 금지의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에 대한 제한의무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라. 관세동맹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개별 WTO회원국 또는 관세동맹 전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동할 수 있다. 관세동맹 전체를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때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위협을 결정하는 모든 요건은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조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개별 WTO회원국을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때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위협을 결정하는 모든 요건은 동조치가 적용되는 특정 WTO회원국에서 존재하는 조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EU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다.

2. 시간적 요건

체약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에 필요한 시간동안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잠정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따라서 체약국의 재량폭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

심각한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하여 발동될 수 없다. 그러나 수입국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를 위하여 계속 필요하고,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치의 기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발동기간이 연장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기본기간의 말기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자유화(degressive)되어야 한다. 결국 잠정적 발동을 포함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장 8년을 초과하여 발동될 수 없다.

나. 회색조치의 철폐

WTO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이프가드협정에 일치하지 않은 GATT XIX조상의 수입제한조치인 소위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WTO회원국은 특히 수입제한조치중에서 가장 선별적인 자율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 OMA) 또는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러한 회색조치는 일방 WTO회원국이 취한 것이든

들이상의 WTO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취한 것이든 불문한다. 또한 WTO회원국은 회색조치와 동등한 비정부조치(non-governmental measures)를 공사기업이 유지하거나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수출을 제한하는 산업간 협정도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제3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통고권리와 세이프가드위원회와 무역정책검토기관의 정기적인 감시를 통하여 이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색조치의 철폐는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보상적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체약국은 궁극적으로는 동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영향을 받은 다른 체약국은 “상당히 동가적인 양허 또는 GATT의무(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를 정지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려는 체약국은 동 조치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급박한 상황의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상품의 상당한 이익(substantial interest)을 갖는 수출국들과 체약국단에게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협의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수입국은 GATT XIX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한 GATT의무의 정지는 GATT의 자유무역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수입국이 그 관련 수출국에게 보상의 방법으로서 다른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동조치의 발동을 연장하려는 WTO회원국은 동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수출회원국에 대하여 “양허와 다른 GATT의무의 상당히 동등한 수준(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concessions and other obligations)”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WTO회원국은 협의를 통하여 보상적 조치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GATT 규정과 다른 점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

는 WTO회원국과 동조치로 영향을 받는 WTO회원국 사이의 양허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명시된 점이다.

협의 개시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영향받은 WTO회원국은 동조치가 발동된 후 90일 이전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로는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서면통고된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취할 수 있으며, 상품무역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의 특이한 점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절대적 수입증가(absolute increase in imports)로 야기된 경우에는 동조치가 발동되는 첫 3년 동안에는 보복조치(right of suspension)가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복조치의 부담을 덜 갖는 WTO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어

식품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국내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무한경쟁을 해나가야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과 관련된 세제 및 관세율체계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수입개방의 확대와 무역관

련제도의 선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인한 산업피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식품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중소기업이 병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때문에 수입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실정이다.

내수시장의 확보가 식품산업의 세계화 추진에 가장 중요한 기반임을 고려할 때, 수입급증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내식품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방화시대에 있어 국내농업의 현실상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식품산업에 대한 잦은 산업피해구제조치는 국내농업과는 물론 식품산업내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간에도 침예하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야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수출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뿐만아니라 국내산업간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당해물품에 대한 산업피해만 검토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타산업에도 미치는 영향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탄력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